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5
----------	-----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유공자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변경(안 제4조제1호)

-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당초예산 계상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08. 11. 19 ~ 12. 08 (20일간)
- 2) 입법예고결과 요약 :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월 1만원” 을 “월 2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생 략)</p> <p>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u>1만원</u> 지급</p> <p>2~3.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p> <p>1. ----- 월 <u>2만원</u></p> <p style="text-align: center;">--</p> <p>2~3.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007.07.10 조례 제20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

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참전명예수당은 매분기 다음달에 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확인) 시장은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강릉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